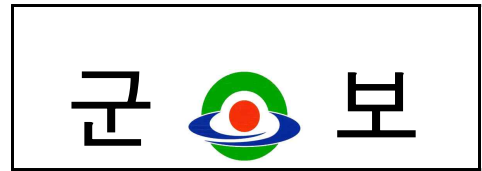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429호 2023. 3. 6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규 칙

○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예천군 규칙 제1316호)

훈 령

○예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(예천군 훈령 제447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(전화 650-6065)

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3월 6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규칙 제1316호

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,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의3제3호 중 “전가”를 “전가(轉嫁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산하기관에”를 “단체에 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”을 “제4호 각 목의”로, “산하기관”을 “단체”로 한다.

가. 공무원의 소속기관

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

다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

제14조의4 중 “서면”을 “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9항 본문 중 “공무원은”을 “공무원이”로, “미리”를 “미리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”로 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하고,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,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,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

[별표 1]

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4조제3항 관련)

구 분	가액 범위
1. 음식물 : 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	3만원
2. 경조사비 : 축의금, 조의금은 5만원 다만, 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	5만원 ※ 화환·조화 : 10만원
3. 선물 :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 산물(이하 "농수산물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 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 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"농수산가공품"이라 한 다)은 10만원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 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)으로 한다.	5만원 ※ 농수산물· 농수산가공품 : 10만원 (20만원)

※ 비 고

- 가. 제1호, 제2호 본문·단서 및 제3호 본문·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·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다.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)으로 하되,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라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[별지 제14호의2서식]

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

신청자	성명	소속
	직위(직급)	연락처

<아래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>

요청기관명	①	②	③	④	⑤
요청기관 담당자 (연락처)					
외부강의등의 명칭 (강의대상)					
대 가 (천원)	()천원	()천원	()천원	()천원	()천원
외부강의등의 날짜 및 시간	년 월 일 (시간)	년 월 일 (시간)	년 월 일 (시간)	년 월 일 (시간)	년 월 일 (시간)
활동유형	[] 강의·강연 [] 발표·토론 [] 심사·평가· 자문·의결 [] 기타()	[] 강의·강연 [] 발표·토론 [] 심사·평가· 자문·의결 [] 기타()	[] 강의·강연 [] 발표·토론 [] 심사·평가· 자문·의결 [] 기타()	[] 강의·강연 [] 발표·토론 [] 심사·평가· 자문·의결 [] 기타()	[] 강의·강연 [] 발표·토론 [] 심사·평가· 자문·의결 [] 기타()
외부강의등의 횟수(또는 시간)	월 총 횟수(시간) : 회 (시간)				
월 3회 또는 6 시간 초과 사유					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예천군수 귀하

◇개정이유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의 제정·시행으로 위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·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,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◇주요내용

가.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·중복되는 조문 및 별지 삭제(제5조 ~ 제5조의6, 제13조, 제16조, 별지 제3호 ~ 제9호, 제17호)

나. 조문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(안 제13조의3, 안 제14조의4)

- 제5조 및 제5조의4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‘서면’ 및 ‘산하기관’ 용어 정비
- ‘전가’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‘전가(轉嫁)’로 한자 병행 표기

다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(안 별표 1)

- 설날·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범위를 두 배(10만원 → 20만원)로 상향

라. 외부강의 관련 서식 신설(안 별지 제14호의2)

-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 승인 신청서 신설

예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3년 3월 6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훈령 제447호

예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청원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예천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.

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청원업무 주관부서·처리부서) ① 「청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(이하 “주관부

서”라 한다)는 기획예산실로 한다.

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(이하 “처리부서”라 한다)에서 담당한다. 다만, 접수된 청원의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(청원심의의 원칙) 법 제8조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청원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청원심의회 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,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② 심의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군수로 한다.

③ 외부위원은 군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천군수가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내부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부군수, 주관부서장, 그 외 군 소속 부서장으로 하고,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예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 ·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·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

운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4.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5. 청원 관련 사항을 누설한 경우

제7조(청원심의회 심의사항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
2.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 결과 등
3.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(청원심의회 운영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 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

있고,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4.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

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 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,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.

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제9조(심의회 개최 요구)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7조 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,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)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·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견청취 및 제출)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,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·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

안건	
일시	. . .
검 토 의 견	

위원 성명 :

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2호서식]

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

[illegible]

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

1. 청원인

- 성 명 :
- 생년월일 :

2. 청원 요지

-
-

3. 개최 이유

-
-

4. 요청 시기

-

5. 검토 의견

-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

◇제정이유

청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예천군 청원심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 예천군에 접수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.

◇주요내용

가. 청원업무 주관부서와 처리부서 (안 제3조)

- 주관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하며, 처리부서는 청원의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로 함

나. 청원심의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 (안 제5조 ~ 제6조)

- 위원장(부군수)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.
- 해촉사유 발생시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가능

다. 청원심의회 심의사항 (안 제7조)

-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
-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

라. 청원심의회 운영 (안 제8조)

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
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